

부산광역시 고시 제2019-24호

도시관리계획(시설:체육시설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1.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(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“<http://luris.molit.go.kr>” 에서 열람 가능)는 부산광역시 시설계획과 및 기장군청 휴먼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2019년 1월 30일
부산광역시장

1. 도시관리계획(시설:체육시설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고시 조서

체육시설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 분	위 치		면 적 (㎡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기정	변경	기정	변경	변경후		
변경	13	체육 시설	골프장	기장군 일광면 이천리 산34-29번지 일원	기장군 일광면 이천리 12번지 일원	1,450,261	감)1,253	1,449,008	1999.10.23	

○ 변경 사유서

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13	체육 시설	○ 결정면적 변경 -1,450,261㎡→1,449,008㎡(감1,253㎡) ○ 대표지번 변경 -기장군 일광면 이천리 산34-29번지 일원 → 12번지 일원	본 체육시설과 중복결정되어 있는 도시 계획시설(도로)부지와 하천구역(동백천) 편입부지를 제척하고, 사업시행에 따른 토지 등록전환 등으로 지번이 변경됨에 따라 대표지번 변경

2. 관계도면 : 게재생략(위의 비치장소 보관도면과 같음).